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8. 27	7. / (총 16	5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서울특별시	과 장	김 정 일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유 효 연		02-2133-7669
인천광역시	단 장	안 광 찬		032-440-7801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담 당 자	이 은 실		032-440-784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전 화	031-8008-5422
경상남도	단 장	노 혜 영		055-211-7652
생활방역추진단	담 당 자	표 상 희		055-211-093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혁신추진단TF	과 장 팀 장 담 당 자	김 국 일 유 정 민 김 민 주		044-202-2420 044-202-2419 044-202-2414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총괄팀	II <td< td=""><td>소 일 룡 조 성 덕</td><td></td><td>044-202-3741 044-202-3742</td></td<>	소 일 룡 조 성 덕		044-202-3741 044-202-3742

코로LHI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수도권 집단감염 신속 검사대상 및 관리방안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의사단체 진단휴진 상황보고, ▲수도권 집단감염 신속 검사대상 및 관리방안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 국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 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을 통해 사업장의 밀집도를 낮추고, 물류센터 등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은 위험 요인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뎌지게 만드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주의**하고, **방역당국의 조치를 믿고 따라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경남)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8월 27일(목)부터 택배 물류센터 등 **49개 물류시설** 에 대한 고강도 방역지침을 시행한다.
 - 조끼·장갑 등 공용물품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비대면 하역, 분류, 배송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100명 이상 근무업체에 대해 서는 시설 출입 시 전신 소독을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권고한다.
 - 한편 태풍 '바비'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8월 27일(목)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실외 선별진료소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다만, 태풍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실내 선별진료소와 민간병원의 선별진료소는 정상 운영한다.









평 생 친 구

- **인천광역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즉각대응팀을 파견하여 위험도 평가, 검체 채취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접촉자 파악 및 심층 역학조사 등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이와 함께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체 수송 전담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진단검사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현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던 검사시간은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되며, 주말과 공휴일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 이와 함께 임시생활시설·생활치료센터 공동활용 등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 **경상남도**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사랑제일 교회 및 광화문 집회 관련하여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수도권의 감염이 도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 수송차량 탑승명단 파악, 인솔책임자 방문 설득 등을 통해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참가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 향후 집회 참가자에 대한 심충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평생친구

2 수도권 집단감염 신속 검사대상 및 관리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수도권 집단감염 신속 검사대상 및 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 최근 **종교 시설과 도심 집회** 등을 통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지역까지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검사와 격리를 통해 추가 전파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 지난 8월 22일(토)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합동 현장 역학조사**를 통해 교인과 방문자 명단 등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자료 분석을 거쳐 **잠정 5,912건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당초 서울 특별시를 통해 확보한 4,066건보다 1,846건이 증가한 것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리대상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고,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통신 3사의 기지국 정보 등을 활용하여 5만1242명(잠정)을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향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회 참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검사를 독려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검사대상자는 **본인과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 검사거부 등 **방역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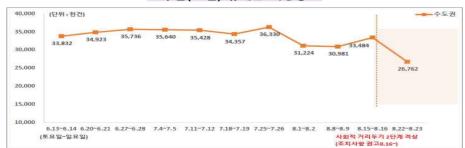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조치에 따른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 어제(8.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배포

<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 >

기동 건수	S이동 통신사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금액	S카드사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도권 - 이요	서울시· 이처시경기드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 이용현황
		도권 서울시

- □ 분석 결과 8월 19일(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주말(8월 22일~8월 23일)동안의 이동량은 직전 주말 대비하여 약 1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의 휴대폰 이용량은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보다 20.1% 감소(672만 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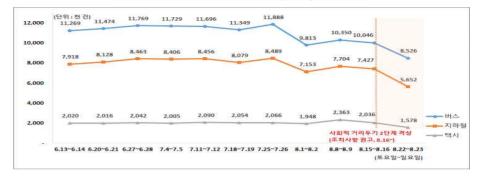




평생친구

②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직전 주말(8월 15일 ~8월 16일) 대비 19.2% 감소(375만 건) 하였다.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



❸ 수도권 카드 매출은 **직전 주말**(8월 15일 ~8월 16일) **대비 11.5% 감소** (1,345억 원) 하였다.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주말 수도권의 이동량 감소는 지난 2월 대구·경북 위기 당시 나타난 감소량(최대 38.1% 감소)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기에 부족하다며,
 -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그간의 집단감염 확산의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기억하면서, 당분간 외출과 모임, 약속을 삼가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가 집단휴진을 강행**함에 따라 어제 **대** 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으로 신고하였다. 대한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이에 따르면 개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단체에 5억워의 과장금을 부과 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반이 구성되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보건복지부는 8월 26일 8시에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주요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현장조사는 우선 해당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명단을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한 뒤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내, 중화자실은 익일 오전 9시까지 복귀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불이행시에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이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 어제(8월26일)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상황이다.
- 오늘은 어제 방문한 수런병원을 재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이 발 부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미복귀 시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평생친구

-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법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화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 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한편, **대한전공의협회 지침** 등에 따라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 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하였으며, 이 경우 병위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뒤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채증을 실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 주도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신속한 수사·기소**가 가능 하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현재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환자분들의 불안과 불편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치료받아야 하는 응급화자와, 수술이 연기되어 애를 태우는 암 화자 등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 전공의 등 의사단체에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
- 지역 의위 등에 대해서도 휴진율이 10%를 초과하는 등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한다면,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 생 친 구

- 8월 26일 **전국 평균 휴진율은 10.8%이고 3,549개소가 휴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4개 시도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가시험을 앞둔 의대생에 대하여
 시험응시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 신청 여부
 와 ▲정말로 시험을 취소할 것인지를 여러차례 전화와 문자로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며, 시험응시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시험 응시를 취소 처리하고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어제 연세세브란스병원 내 전공의대표 회의 중 서대문경찰서 직원이 회의장을 급습하여 전공의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명백한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확산되어, 서대문경찰서 에서 내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히며,
 -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며, 이와 같은 뉴스를 접할 때는 항상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다.





평생친구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26일(수)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397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42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3552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340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8.26)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0명**을 적발하여, 이 중 9명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59개소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61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8월 26일(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회 634개소, ▲유흥시설 9,850개소 등 37개 분야 총 3만227개소를 점검하였고, 소독대장 미작성, 마스크 미착용 등 216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만42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323반, 1,971명)하여 심야 시간 (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평생 친구



-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사항
- 3. 국민 행동 지침
- 4.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2. 안전하고 쿨~한 여름방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 3. 안전하고 쿸~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 (行)·3금(禁) 수칙 포스터
- 4.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7.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8.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 9.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10.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6.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평생친구

붙임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 1) 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 2) 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 의료진 양심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 (8.19. 방대본 브리핑 중)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사랑제일교회 장로님과 전도사님 부부가 보건소에서 확진 받고 백백원에서 재검했는데 음성판정 오늘저녁 7시에 나왔습니다

설마설마했는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건소 검사에서 양성 나오시는분들은 무조건 병원에서 재검 받으세요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 1) 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진행
- 2) 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검체 음성)
- 3) 양성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시대*****)















평생친구

붙임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 수도권 8.19. 0시, 수도권 외 지역 8.23. 0시(학교는 8.26일)부터 시행

구분		조치사항				
집합· 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 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다중 이용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中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시설	민간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O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O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O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기관,	공공	O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 전 인원의 1/2)				
기업	민간	O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평생친구

붙임3

국민 행동 지침

[국민 행동 지침]

-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 ②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 (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 ③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평생 친구

붙임4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하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과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워격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김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충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 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평생친구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